

‘판권(版權)’은 없다

저작권과 출판권 혼용 … ‘판권’은 일제말의 찌꺼기

김성재

일지사 대표

‘판권’은 출판을 한 출판자의 권리이고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의 권리로 알고 있는 이가 적잖이 있다. 아니, 대부분이다. 판권을 출판자의 권리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일반인뿐이 아니다. 출판인도 그렇고, 심지어는 사전의 풀이까지도 그렇다. 어찌 면 ‘판권’이라는 말의 뜻을 알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 말을 처음 만든 일본에서도 이미 사어(死語)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 출판계에서는 아직도 이 말이 죽지 않고 많이 쓰이고 있다. 책의 본문이 끝난 다음 그 끝에 발행 연월일·저작자명·출판사명·정가 따위 출판 사항을 적은 쪽을 간기면(刊記面:imprint-page, copyright-page)이라 하는데, 이것을 대개 ‘판권장’이라 부르고 있다. 사실은 간기면을 책 끝에 붙이는 것도 일제의 찌꺼기다.¹⁾ 최근 우리나라 일부 출판사에서 구미의 본을 따서 표제면(標題面:full title page) 뒷면에 이 간기를 싣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면 판권이란 말이 언제부터 쓰였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일본에서는 이미 1869년에 ‘출판조례(出版條例)’라는 것이 제정되었는데, 1875년에 이 출판조례를 개정하면서 판권이라는 말이 처음 나타났고,²⁾ 1887년에 개정된 출판조례에서는 “판권은 저작권자에게 귀속되고 저작자 사망 후에는 그 상속자에게 귀속된다”는 조문이 나온다. 또, 이 해에는 사진판권조례도 제정되었다. 1893년에 이르러서는 이 출판조례가 ‘판권법’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1899년에는 근대적인

판권은 출판자의 권리,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로 잘못 알고 있는 이가

적잖다. 판권을 출판자의 권리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일반인 뿐만

아니라 출판인까지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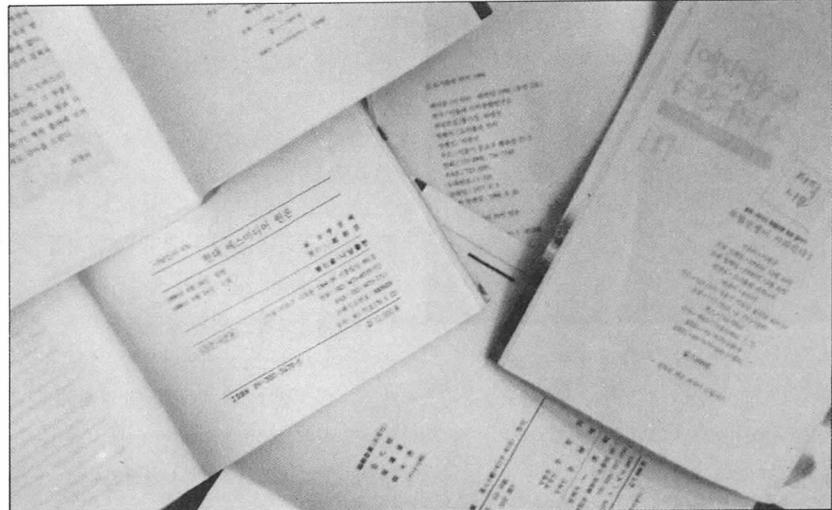
일본의 영향으로써오던 ‘판권’이란

말을 그대로 쓰니 부끄러운 일이다.

‘저작권법’이 제정됨으로써 ‘판권’이라는 말은 ‘저작권’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저작권’이란 말로 대체됨으로써 죽은 말이 돼버린 ‘판권’이라는 말은 그 후에도 일본에서 많이 쓰였던 것 같다. 그리하여, 그 영향을 받은 한국에서도 판권이 저작권의 뜻으로 쓰였던 흔적이 1910년을 전후한 신소설이나 고소설 활자본 간기면에서 볼 수 있다. 또, 신소설 〈명월정〉 말미에 “이 글은 박이양씨의 저작이나 저작권이 남궁준 소유이기로 발행겸 저작권 소유는 남궁준이라 하오(명월정, 유일서관, 1912, 180쪽).”³⁾라는 글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소설에는 간기면에 ‘판권소유’라는 표시를 한 것이 많다. 이 판권소유를 출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이가 많고, “저작권을 출판자에게 양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저작자의 의사 표시로 해석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로⁴⁾ 보는 이도 있으나, 실상은 1887년에 개정된 출판조례에서 저작권



책의 발행연월일·저작자명·출판사명·정가 따위의 출판사항을 적은 간기면.

취득의 표시로 의무화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이 양도되어 판권 곧 저작권을 출판사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뜻의 표시로 쓰이기도 한 것 같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판권’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로서는 일본에서 백여년 전(1899)에 사야가 돼버려 ‘저작권’이라는 말로 대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영향으로 써 오던 이 말을 아직도 그대로 쓰는 이가 있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도 ‘출판권’의 뜻으로 여기는 이가 있는가하면 ‘저작권을 양도했음’의 뜻으로 쓰는 이도 있는 형편이다. 출판계에서 예사로 쓰는 ‘판권장’이니 ‘판권면’이니 하는 말부터 우선 몰아내야 하지 않을까. ♦

1) 간기면을 책 끝에 붙이는 습관은 1893년의 일본 〈판권법(版權法)〉에 따른 것이다. 곧, 이 법 제7조에는 “문서도화(文書圖畫)의 발행자는 그 씨명(氏名: 성명의 일본식 말), 주소 및 발행 연월일을 그 문서도화의 말미(末尾)에 기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던 것이다[阿部浩二, 著作権とその周辺, 日本評論社, 1983,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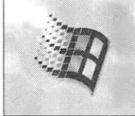
2) ‘도서를 저작하고, 또는 외국의 도서를 번역하여 출판할 때’ ‘30년간 전매(專賣)의 권리’를 주며, ‘이 전매의 권한을 판권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文化廳, 著作権法ハンドブック, 著作権資料協會, 1987, p.4]. 위의 글에서 ‘출판할 때’의 주체는 저작자로서, ‘전매의 권리’도 저작자에 의한 출판의 특권 즉 판권으로 보이야 할 것이다. 곧, 저작권자가 가지는 독점적인 저작출판권이 판권인 것이다.

본래, 이 ‘판권’이란 말은 일본에서 해적판의 속출에 고심한 福澤諭吉의 저작자의 권리 보호의 필요를 열심히 제창하여 1873(明治 6)년 7월 15일부로 東京府에 낸 문서 속에, copyright을 저작자에 의한 ‘출판의 특권’. 혹은 출판에서 ‘版權’이라譯註한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布川角左衛門, ‘本の周邊’(1980, 日本エディタースクール出版部) p.11]

3) 韩基亨, 1910년대 신소설에 미친 출판·유통 환경의 영향, 韓國學報 84輯, 1996년 가을호, p.146 참조.

4) 위 책(著作権とその周邊 p.17).

IBM & MAC 전문출력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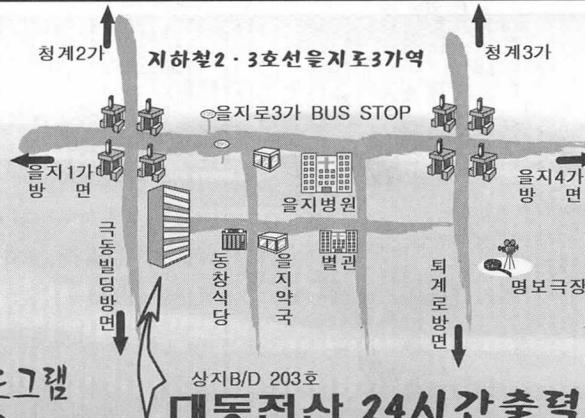


IBM 출판

- F1 인화지, 필름, 칼라프린터, 레이저프린트
- F2 입력, 편집대행, 교육지원
- F3 PC로 작업한 데이터 편집출력
- F4 다양한서체, 최대한자 및 고어지원
- F5 훈글, MS WORD7.0, 훈민정음,

COREL6.0 PhotoShop Windows95 응용프로그램

F6 IBM 분판출력 농도나 해상도에 불만인분



대동전산 24시간출판

MAC 분판출판

대형 칼라 인화지

대동전산

서울 중구 을지로3가 326 상지B/D 204호

TEL : 275-0196~7(출판실)

265-9271, 275-7143.5(전산실)

FAX : 275-7145 천리안 · 하이텔 : SOGO0318